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6일, 김성기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3년 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3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성기 의원)

가. 제안이유

평창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군수의 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안 제3조)
- 2) 해설사 직무(안 제4조)
- 3)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준수하여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설치(안 제5조)
- 4) 해설사 교육 및 활동비 지원 등(안 제6조 ~ 제7조)
- 5) 해설사 포상(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문화·관광자원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위 법령을 중복되는 내용 없이 간결하게 준용하여
우리 군 지역 실정에 걸맞게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군의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받아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

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한 해설사에 대해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
5.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 및 해설의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 ① 법 제 48조의6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2019. 4.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4. 25.>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배치·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7조의3(별표17의2)을 따르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별표1과 같다.

제7조(배치원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객관·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운영)①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4. 기타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제6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교육)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한 해설사에 대해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
5.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김성기의원
연락처	(033) 330 -2501